

수업연한단축에 따른 조기수료 지침

제정 2010. 08. 20. 지침 제14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학원학칙 제22조 및 부칙 제2항(경과조치) 라호에 의거, 통합과정생의 수업연한 단축에 따른 조기 수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종전 학칙을 적용하는 통합과정생의 조기 수료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조기 수료라 함은 학칙에 명시된 학위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수업연한을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신청자격) ① 조기 수료 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6개 학기 이상 등록
2. 기초과목, 계열공통과목 및 전공과목 등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취득
3. 전 교과목의 평점 평균이 4.0 이상

② 동종계 인정자는 제1항 제3호의 평점 평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신청횟수 및 시기) 조기수료 신청은 2회까지 할 수 있으며, 그 시기는 6월 말과 12월 말로 한다.

제6조(수료 사정) 조기 수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기존 지침의 폐지)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기존 지침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.

③(한시적 운영) 이 지침은 종전 학칙에 의한 통합과정의 재적생이 있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